(例人)

피보험자 이직확인서 -686-1767 / 팩스 0508-8230-0750)

접수번호			, ,	, 00 · I	접수일		_ 030	-	0230-	처리기긴	Ŀ:10일 	
*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92	21-26-3	383-141	83-141			년락처	031-686-1767		67
	사업장명		인	성시청					당자 당부서)	(일자리센터)		1)
	소재지											
	하수급인관	리번	호( <mark>건</mark>	설공사 -	등의 미승	인 하수	급인인	경우(	에만 작 <mark>성</mark> )	)		
*피보험자 (퇴직자)	성 명		홍길등	<u>.</u>					대)전화 번호			
	주민번호						99110	00 –	1000000			
	주 소		안성	나 장기	로 131							
	입사일(피.	보험지	다격 취	취득일)	21.5	.1.	이걸	딕일(	근로제공	마지막 닐	날) 21.	12.31.
①*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(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)				코드								
					계약만료							
②*피보험단위기간 ③			L수지 급 초일수				된	평균임금 산정명세				
	21.12.31.		27				부	-터	부터	부터	부터	ᅕᅕ
21.11.1.~ 21.11.30			26	(3)*	엄금세인	심금계산기간		지	까지	까지	까지	총 합
21.10.1.~ 21.10.31			26		⑥*임금계산기간 총 일수			일	일	일	일	일
21.9.1.~ 21.9.30			26					01	01	o)	01	01
21.8.1.~ 21.8.31			27 26		기본급			원	원	원	원	원
21.6.1.~ 21.6.30			26		기타	수당		원	원	원	원	원
~				임금	상여금 ( 3/12)	(이직	전 12	개월	간 지급	된 상여금	총액×	원
~					연차수당(이직 전 :					'된 연차수	당 총액	총액 원
~					× 3/12)							
~				8 1	⑧ 1일 통상임금 (필요한 경우에만 작성)						원	
④ * 통산피노	브험단위기간		184 9	<u>a</u> 9 1	⑨ 1일 기준보수 (해당되는 사람만 작성)						원	
⑩*1일 소전	정 근로시간				4시간 0	하, □	5시간,		6시간, 🗆	] 7시간, [	□ 8시간 0	기상
⑪ 초단시간 근로일수(해당자만 작 성)					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,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(일)							
⑫ 기준기간 연장(해당자만 작성) 사유코드												
사유코드: 1. 질병 · 부상, 2. 사업장 휴업,3. 임신 · 출산 · 육아, 4. 기타 사유					장기간							
「고용보험법」제42조제3항(제43조제4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·제2항(제82조의2제4항·제5항)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(제출)합니다.												
							제결	출일	년	월	일	
발급자(제출자) □ 사업장명												
□ 보험사무대행기관 (서명 또는 인)									명 또는 인)			

#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주요 설명

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- 퇴사사유에 따라 다르게 기재

주요코드설명

- [11] 개인사정 (질병, 간병, 학업, 진학, 타회사 입사, 군입대 등 본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)
- [12] 사업장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(임금체불 등)
- [22] 폐업
- [23] 회사 경영상 권고사직
- [26]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 징계해고,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권고사직 등
- [31] 정년퇴직
- [32] 계약만료, 계약종료
-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, ③보수지급 기초일수,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

②*피보험단위기간	③*보수지급
산정대상기간	–
선정내성기간	기초일수
21.12.1.~ 21.12.31.	27
21.11.1.~ 21.11.30	26
21.10.1.~ 21.10.31	26
21.9.1.~ 21.9.30	26
21.8.1.~ 21.8.31	27
21.7.1.~ 21.7.31	26
21.6.1.~ 21.6.30	26
~	
~	
④ * 통산피보험단위기간	184일

-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가장 최근 일한 달부터 역산하여 작성
- **보수지급 기초일수**는 보수를 산정하는 일수를 작성 (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일 경우 근무일(월, 화, 수, 목, 금) + 유급휴일(일요일) 포함 하여 작성합니다. 이렇게 계산하면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달 26 ~ 27일로 산정됩니다.)
- **통산피보험단위기간**은 180일이 기준입니다.

(18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실제 일한 날수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.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80일 넘으면 해당 칸의 작성을 멈춥니다. 대략 181 ~ 190일선에서 종료됩니다.)

# ⑤임금계산기간, ⑥임금계산기간 총일수, ⑦임금내역

⑤*임금계산기간		12.1부터 12.31.까지	11.1부터 11.30까지	10.1.부터 10.31.까지	부터 까지	초 하		
⑥*임금계산기간 총 일수		31일	30일	31일	일	일		
7 * 에따대	기본급	1,700,000 원	1,700,000 원	1,700,000 원	원	원		
	기타 수당	300,000원	300,000원	300,000원	원	원		
	상여금(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×3/12)							
역	연차수당(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× 3/12)							

- 임금계산기간: 그 달의 근로시작일부터 마감일을 기재합니다.
- 임금계산기간 총일수: 해당하는 달의 총 일수를 기재합니다.
- 임금내역: 기본급과 기타수당, 상여금, 연차수당(위의 공식참조)을 기재합니다.

## ⑩ 1일 소정근로시간

- 근로계약서 상의 1일 근로 시간을 체크. (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.)

### 기타 공통 안내 사항

- 작성기관, 업체의 명칭, 직인 날인 바랍니다.
- 통상 이직일은 4대보험 상실일자의 하루 전날입니다. (상실일자와 이직일자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확인 바랍니다.)
- 작성하신 분의 소속, 성함,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.

위의 내용 참고하여 작성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<u>안성고용센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</u> 담당자 (전화 031-686-1767)에게 문의바랍니다. 끝.